

삼육대학교 학칙 개정(안) 공고

삼육대학교 학칙 제77조 규정에 의거하여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(안)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3.7.31.(월)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교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개정사유

[대학혁신지원사업] 운영에 따른 대학의 학사운영 기준 확대

2. 주요 개정 내용

1) 학칙 제40조(학점인정) ④항 K-MOOC 강좌 취득학점 인정

3. 학칙 개정(안):

현행	개정	비고
제40조(학점인정) ①~③ 생략 ④ (K-MOOC 강좌 취득학점 인정) 지식 공유를 주도할 온라인 K-MOOC 개설 강좌 중 본교가 정한 과목을 수강한 후 이수증을 제출한 학생에게 학기당 1학점, 재학 중 총 3학점까지 인정한다. ⑤~⑥ 생략	제40조(학점인정) ①~③ 생략 ④ (K-MOOC 강좌 취득학점 인정) 지식 공유를 주도할 온라인 K-MOOC 개설 강좌 중 본교가 정한 과목을 수강한 후 이수증을 제출한 학생에게 학기당 3학점, 재학 중 총 12학점까지 인정한다. ⑤~⑥ 생략	제40조 ④항 수정

4. 학칙 개정(안)에 대한 의견서 양식 1부: 붙임

5. 회신

- ① 회신기한: 2023.7.31.(월)
- ② 회신방법: e-mail(prof_data@syu.ac.kr)
- ③ 문의: 교무처(02-3399-3150)

2023. 7. 25

삼육대학교 총장